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 및 인구구조의 변화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하여 중장기 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 설정·관리 및 사회연금·보험 재정추계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2.00.00 공포, 2022.00.00 시행)됨에 따라 경제구조개혁국의 인구경제과를 미래전략국의 인구경제과로 개편하고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하되, 미래전략국의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통폐합하여 지속가능경제과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3. 경제차관회의의 운영
4.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별 상황에 대한 조사·분석
5. 경제제도·기업관련 법률·제도의 조사·분석
9. 그 밖에 민간중심 경제성장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0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기업환경평가에 관한 업무

제13조의2제2항 중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경제지원과, 인구경제과, 복지경제”를 “인력정책과, 노동시장경제과, 복지경제과, 연금보건경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분석·기획 및 협의·조정”을 “총괄·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득주도 및 포용적”을 “포용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소득분배 및”을 “경제구조의”로, “시책”을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경제 분야와 관련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조정

④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에 대한 동향의 조사·분석
2.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협의 조정
3. 임금 및 노동생산성 등에 대한 동향의 조사·분석
4. 경제구조 변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인력정책의 협의·조정
5. 일자리 공급·수요 부문 간 연계 강화 정책의 협의·조정
6. 직업훈련,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7. 근로유인 및 고용안전망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조정
8. 외국인력 정책의 협의·조정
9. 그 밖에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수립 및 협의·조정

제1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지원과장”을 “노동시장 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2.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응한 경제정책의 협의·조정

6. 그 밖에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협의·조정

제13조의2제5항제7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7호) 중 “근로유인”을 “산업안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구경제과장”을 “연금보건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구구조 변화 연구·분석 및”을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금제도의 경제·금융 부문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
3. 경제·금융·재정부문과 관련한 보건의료분야 사회보험정책의 협의·조정
4. 의료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5. 그 밖에 경제·금융 부문과 관련한 연금·보험 제도 및 보건의료 정책의 협의

제13조의2제8항(종전의 제6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획 및 협의·조정”을 “협의·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협의·조정

4. 소득분배, 가계수지 등 가계소득 관련 동향의 조사·분석

5. 그 밖에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협의

제13조의3의 제목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기전략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기전략국에 미래전략과·사회적경제과·협동조합”을 “미래전략국에 미래전략과·지속가능경제과·인구경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지속가능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2호) 중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경제”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을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Social·Governance, 이하 “ESG”라 한다) 확산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6호) 중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경제”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

2. 지속가능경제발전 관련 국내·해외사례 수집 및 동향 조사·분석

6.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8.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성공사례 발굴·보급
 9. 사회적경제의 사회적성과 및 가치 평가와 관련된 사항
 4. ESG 국내·해외사례 수집 및 동향 조사·분석
 5. ESG 관련 기재부 소관 정책 수립·추진
 11. 사회적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13. 협동조합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 총괄·조정
 14.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통계개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협동조합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5.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중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인가 및 감독(경영공시 포함)에 관한 사항
 16. 「협동조합 기본법」의 해석 및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운영
 17.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자체·관계부처 협동조합 정책 지원·조정,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18. 「협동조합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 및 협동조합 교육 지원
 19. 협동조합정책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의 교류 및 해외사례 조사·분석
 20. 그 밖에 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제13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동조합과장”을 “인구경제과장”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인구구조 변화 연구·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2. 적정 인구수준 유지를 위한 제반 정책의 협의·조정
3. 중장기 인구구조 관련 혁신 전략의 협의·조정
4. 인구구조 관련 세대간 형평성 제고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5. 중장기 인구구조 대응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
6.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7. 그 밖에 인구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조정

제15조의 제목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혁신국장”을 각각 “재정정책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재정기획심의관으로 하며, 재정기획심의관”을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하며,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재정건전성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19호부터 제19의2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5조제4항 중 “재정혁신국에 재정전략과·지출혁신과·재정제도과·재정건전성과·재정정보과 및 참여예산과”를 “재정정책국에 재정정책총괄과·재정건전성과·재정분석과·재정제도과·재정협력과 및 재정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전략과장”을 “재

정정책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출구조조정”을 “지출효율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장기 재정정책의 및 전략의 수립·총괄·조정

8.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9.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운용목표의 설정·관리

10. 장기재정전략의 기획·조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제5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7항, 제8항, 제6항, 제10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출혁신과장”을 “재정분석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정책의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

3. 해외 주요 재정정책 동향 분석

4. 국제기구 및 국제신용평가사의 재정 관련 보고서 분석·협의

5. 재정규모 및 재정지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 변수에 대한 조사·분석

6. 중장기 재정전망 및 추계에 관한 사항

7. 사회연금·보험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8. 재정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재정통계의 분석 및 정비방안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0. 국민부담률 전망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분석

제15조제8항(종전의 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제도 혁신”을 “재정법제의 범위와 체계개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정제도와 관련된 교육·홍보”를 “재정제도 관련 대국민 홍보”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재정법」의 해석·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운용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정정책 과제의 제도화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7. 재정사업 전달체계 분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재정지출·조세지출 간 연계·통합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9. 해외 재정제도의 조사·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10. 재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조정

제15조제6항(종전의 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 설정·관리
6. 국내 월간 재정동향 발간
7. 주요국의 국가 채무 및 건전성 지표 관련 조사·분석
15. 그 밖의 재정건전화 관련 현황 분석·협의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0항(종전의 제9항)제2호 중 “수집·분석 및 정보화”를 “정보

화”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여예산과장”을 “재정협력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 주요 기관과의 재정협력 총괄
2. 국내 연구기관·학회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해외 주요국과의 재정협력에 관한 사항
5. 아시아·태평양 재정협력체 운영

제15조의2제5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운영
4.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의 운영

제15조의2제5항제6호, 제6호의13 및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부정 수급 대응 등 국고보조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관한 사항

2의2. 부처별 유사·중복 보조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8.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운영을 위한 정책·법령·제도의 수립
· 조정에 관한 사항

10.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제7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제행사심사에 관한 사항

제22조제3항 중 “참여예산과장”을 “재정협력과장”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 행정주사보 23 다음에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6”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26”를 삭제하며, 행정서기 49 다음에 “행정서기·세무서기·관세서기·전산서기·통계서기 또는 사서서기 15”를 신설하고, 행정서기·세무서기·관세서기·전산서기·통계서기 또는 사서서기 15 다음에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관세서기보·전산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9”를 신설하며, “행정서기·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15”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9”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행정주사보 24 다음에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6”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26”를 삭제

하며, 행정서기 49 다음에 “행정서기·세무서기·관세서기·전산서기·통계서기 또는 사서서기 15”를 신설하고, 행정서기·세무서기·관세서기·전산서기·통계서기 또는 사서서기 15 다음에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관세서기보·전산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9”를 신설하며, “행정서기·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15”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9”를 삭제한다.

별표 1의3을 삭제한다.

별표 4 1) 조직란 1) 중 “일자리경제지원”을 “노동시장경제”로 하고, 같은 표 9) 조직란 9) 중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한다.

별표 4의2 “1.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존속기한: 2022년 10월 31일)”을 삭제하고, “총계 8”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8”를 삭제하고, “고위공무원단 1”를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를 삭제하고,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경제정책국) ① ~ ⑧ (생략)	제12조(경제정책국)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 경제차관회의의 운영</u>
<u><신 설></u>	<u>4. 가계 · 기업 · 정부 등 경제주체별 상황에 대한 조사 · 분석</u>
<u><신 설></u>	<u>5. 경제제도 · 기업관련 법률 · 제도의 조사 · 분석</u>
6. 삭 제	<u><삭 제></u>
<u>7. 소득분배, 가계수지 등 가계소득 관련 동향의 조사 · 분석</u>	8. (현행과 같음)
8. (생략)	9. <u>그 밖에 민간중심 경제성장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u>
<u>9. 고용에 대한 동향의 조사 · 분석</u>	<u><삭 제></u>
<u>10. 임금 및 노동생산성 등에 대한 동향의 조사 · 분석</u>	⑩ (현행과 같음)
⑩ (생략)	제13조(정책조정국) ① ~ ⑨ (현행과 같음)
제13조(정책조정국) ① ~ ⑨ (생략)	⑩ ----- -----.
⑩ 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6. <u>경제제도 · 기업관련 법률 · 제도의 조사 · 분석</u>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① (생략) ② 경제구조개혁국에 경제구조개혁총괄과, <u>일자리경제정책과</u>, <u>일자리경제지원과</u>, <u>인구경제과</u>, <u>복지경제과</u> 및 <u>청년정책과</u>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의 분석 · 기획 및 협의 · 조정</u> 2. <u>중장기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 기획 · 조정</u> 3. (생략) 4. <u>소득주도 및 포용적 성장</u> 관련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5. <u>소득분배 및 양극화 해소</u>를 위한 <u>시책</u>의 협의 · 조정 6. (생략) 7. <u>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경제정책의 기획 및 협의 · 조정</u> 8. (생략)	6. <u>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기업환경평가에 관한 업무</u>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인력정책과</u>, <u>노동시장경제과</u>, <u>복지경제과</u>, <u>연금보건경제</u>----- ----- ----- --. ③ ----- -----. 1. ----- <u>총괄 · 조정</u> <u><삭 제></u> 3. (현행과 같음) 4. <u>포용적</u> ----- ----- 5. <u>경제구조의</u> ----- -- <u>정책</u>----- 6. (현행과 같음) 7. <u>경제 분야와 관련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 · 조정</u> 8. (현행과 같음)
---	---

④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를 통한 분배 및 성장 관련 경제정책의 조정
2.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협의 조정
3.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관련 경제정책의 총괄·협의
4. 부처별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수립에 대한 지원
5. 임금 정책의 협의·조정
6. 경제 분야와 관련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조정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정책의 수립 및 협의·조정

⑤ 일자리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관련 거시경제 및 산업의 공급·수요 부문 간 동향·전

④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에 대한 동향의 조사·분석
2.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협의 조정
3. 임금 및 노동생산성 등에 대한 동향의 조사·분석
4. 경제구조 변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인력정책의 협의·조정
5. 일자리 공급·수요 부문 간 연계 강화 정책의 협의·조정
6. 직업훈련,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7. 근로유인 및 고용안전망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조정
8. 외국인력 정책의 협의·조정
9. 그 밖에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수립 및 협의·조정

⑤ 노동시장경제과장-----
-----.

1.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망 분석

2. 경제구조 변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3. 일자리 공급·수요 부문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경제정책 관련 대책의 협의·조정

4. 직업훈련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4의2. 인적자원개발 및 인력수급 관련 장·단기 정책의 협의·조정

5. (생략)

6.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에 대한 대외협력 업무

7. 근로유인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조정

8. 그 밖에 일자리 공급·수요 부문 전반에 관련된 경제정책의 수립 및 협의·조정

⑥ 인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구조 변화 연구·분석

2.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삭제>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응한 경제정책의 협의·조정

<삭제>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협의·조정

3. 산업안전 -----
--

<삭제>

⑧ 연금보건경제과장-----
-----.

1.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

<u>및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u> 2. <u>적정 인구수준 유지를 위한</u> <u>제반 정책의 협의·조정</u> 3. <u>중장기 인구구조 관련 혁신</u> <u>전략 및 인적자본정책의 협의</u> <u>· 조정</u> 4. <u>인구구조 관련 세대간 형평</u> <u>성 제고 및 외국인력 정책의</u> <u>협의·조정</u> 5. <u>중장기 인구구조 대응 민관</u> <u>합동 협의체 운영</u> 6. <u>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의</u> <u>협의·조정</u> 7. <u>그 밖에 인구 관련 경제정책</u> <u>의 협의·조정</u> ⑦ 복지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u>연금·보험·기초생활보장제</u> <u>도 등 주요 사회복지정책의</u> <u>협의·조정</u> 3. <u>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u> <u>한 정책의 기획 및 협의·조</u> <u>정</u> 4. <u>교육복지·주거복지·의료복</u>	금 ----- 2. <u>연금제도의 경제·금융 부문</u> <u>영향에 대한 조사·분석</u> 3. <u>경제·금융·재정부문과 관</u> <u>련한 보건의료분야 사회보험</u> <u>정책의 협의·조정</u> 4. <u>의료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u> <u>협의·조정</u> 5. <u>그 밖에 경제·금융 부문과</u> <u>관련한 연금·보험 제도 및</u> <u>보건의료 정책의 협의</u> <삭 제> <삭 제> ⑦ ----- -----. 1. (현행과 같음) 2. <u>생계·주거·교육급여 등 기</u> <u>초생활보장제도 및 주요 사회</u> <u>복지 정책의 협의·조정</u> 3. ----- ----- <u>협의·조정</u> 4. <u>소득분배, 가계수지 등 가계</u>
---	--

지 관련 정책의 협의 · 조정

5. 국민 생활비 절감 관련 정책
의 협의 · 조정

⑧ (생 략)

제13조의3(장기전략국) ① 장기전
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
로 한다.

② 장기전략국에 미래전략과 ·
사회적경제과 · 협동조합과 및
기후대응전략과를 두며, 각 과
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
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9. 사회적 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 16. (생 략)

17.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18. · 19. (생 략)

④ 사회적경제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 관련 동향의 조사 · 분석

5. 그 밖에 경제구조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협의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① 미래전
략국장-----

-----.

② 미래전략국에 미래전략과 ·
지속가능경제과 · 인구경제---

-----.

③ -----
-----.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10. ~ 16. (현행과 같음)

<삭 제>

18. · 19. (현행과 같음)

④ 지속가능경제과장-----
-----.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u>계획의 수립·조정</u> <u><신 설></u> 2. <u>사회적 경제</u> 관련 법·제도 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u><신 설></u> <u><신 설></u> 3. <u>사회적 경제 활성화</u>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4. <u>사회적 경제 실태조사</u> 5. <u>사회적 경제 성공사례 발굴 및 보급</u> <u><신 설></u> 6. <u>사회적 경제 해외사례 수집 및 동향 조사·분석</u> <u><신 설></u> <u><신 설></u>	<u>전략의 수립</u> 2. <u>지속가능경제발전 관련 국내 · 해외사례 수집 및 동향 조 사·분석</u> 7. <u>사회적경제</u> ----- -- 8. <u>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성 공사례 발굴·보급</u> 9. <u>사회적경제의 사회적성과 및 가치 평가와 관련된 사항</u> 3. <u>환경·사회·지배구조(Envir onment·Social·Governanc e, 이하 “ESG”라 한다) 확산 을</u> ----- 4. <u>ESG 국내·해외사례 수집 및 동향 조사·분석</u> 5. <u>ESG 관련 기재부 소관 정책 수립·추진</u> 6. <u>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총 괄·조정</u> 10. <u>사회적경제</u> ----- -- 11. <u>사회적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u> 12. <u>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장· 단기 계획 수립 및 총괄·조</u>
--	---

<u><신 설></u>	<u>정</u>
<u><신 설></u>	<u>13. 협동조합 관련 법령의 제정</u> <u>· 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 총</u> <u>괄·조정</u>
<u><신 설></u>	<u>14.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통</u> <u>계개발·관리, 정보시스템 구</u> <u>축 등 협동조합 인프라 구축</u> <u>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5.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u> <u>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u> <u>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u> <u>립신고·인가 및 감독(경영공</u> <u>시 포함)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6. 「협동조합 기본법」의 해</u> <u>석 및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u> <u>지침 마련·운영</u>
<u><신 설></u>	<u>17.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구</u> <u>성·운영, 지자체·관계부처</u> <u>협동조합정책 지원·조정, 민</u> <u>관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체</u> <u>계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8. 「협동조합의 날」 행사 등</u> <u>사업 실시 및 협동조합 교육</u> <u>지원</u>
<u><신 설></u>	<u>19. 협동조합정책 관련 국제기</u> <u>구, 외국정부 등과의 교류 및</u>

7. 그 밖에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및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⑤ 협동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협동조합의 장·단기 발전전략과 정책 방향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 기본법」의 해석 및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세부 업무지침의 마련·운영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결과공표 및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협의

6.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협동조합의 정책수립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분석

<삭 제>

20. 그 밖에 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⑤ 인구경제과장-----
-----.

1. 인구구조 변화 연구·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2. 적정 인구수준 유지를 위한 제반 정책의 협의·조정

3. 중장기 인구구조 관련 혁신 전략의 협의·조정

4. 인구구조 관련 세대간 형평성 제고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5. 중장기 인구구조 대응 민관 합동 협의체 운영

6.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7. 그 밖에 인구 관련 경제정책

<u>통계개발 및 관리</u>	<u>의 협의·조정</u>
<u>8.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에 관한 정책 협의·조정</u>	<u><삭 제></u>
<u>9. 협동조합정책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의 교류 및 외국의 협동조합 관련 정책의 동향 조사·분석</u>	<u><삭 제></u>
<u>10.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인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1.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및 가치 평가와 관련된 사항</u>	<u><삭 제></u>
<u>12. 협동조합의 경영 공시 기준 수립 및 점검, 협동조합 경영자문 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3. 협동조합의 유형별 성공사례 발굴 및 보급</u>	<u><삭 제></u>
<u>14. 협동조합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u>	<u><삭 제></u>
<u>15.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조합 지원 시책 수립·시행 지원</u>	<u><삭 제></u>
<u>16. 협동조합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u>	<u><삭 제></u>

· 시행

17. 협동조합 교육과정 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18. 협동조합 관련 민간단체와
의 협력 및 민간전문가 지원
· 육성에 관한 사항

19. 협동조합 간 업종별·지역
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
항

20. 「협동조합의 날」 정부포
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⑥ (생략)

제15조(재정혁신국) ① 재정혁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
정혁신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은 재정기획심의관으로 하며,
재정기획심의관은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재정정책국) ① 재정정책
국장-----

② -----
----- 재
정정책국장 -----
--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하며,
재정건전성심의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재정기획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11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재정혁신국에 재정전략과 · 지출혁신과 · 재정제도과 · 재정건전성과 · 재정정보과 및 참여예산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재정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혁신 및 지출구조조정에 관한 정책 기획 및 총괄 · 조정
2. 중장기 재정정책의 수립 및 총괄 · 조정
3. ~ 7. (생략)
8.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협의회 및 재정전략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재정법」의 해석 · 개

-----.

③ 재정건전성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19호부터 제19의2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재정정책국에 재정정책총괄과 · 재정건전성과 · 재정분석과 · 재정제도과 · 재정협력과 및 재정정보과-----
-----.

⑤ 재정정책총괄과장-----
-----.

1. ----- 지출효율화-----

--
2. 중장기 재정정책의 및 전략의 수립 · 총괄 · 조정
3. ~ 7. (현행과 같음)
8.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9.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중장

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11. 재정정책 관련 지표의 조사
· 분석에 관한 사항

12. (생 략)

⑥ 지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지출구조 및 재정전달체
계 혁신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분야별 중장기 재정투자 전
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국가재정구조 혁신에
관한 사항

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심층평가(이하 “재
정사업 심층평가”라 한다) 관
련 계획 수립·시행

6. 재정사업 심층평가 수행·관
리 및 관련 교육·홍보에 관
한 사항

7.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와
재정운용·제도개선 등의 연

기 재정운용목표의 설정·관
리

10. 장기재정전략의 기획·조정
·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2. (현행과 같음)

⑦ 재정분석과장-----
-----.

1. 재정정책의 경제·사회적 효
과에 대한 조사·분석

2. (현행과 같음)

3. 해외 주요 재정정책 동향 분
석

4. 국제기구 및 국제신용평가사
의 재정 관련 보고서 분석·
협의

5. 재정규모 및 재정지출 구조
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
변수에 대한 조사·분석

6. 중장기 재정전망 및 추계에
관한 사항

7. 사회연금·보험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계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⑦ 재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운용방식 혁신에 관한 사항

2. 재정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

3. (생략)

4. 국내외 재정제도 및 재정동향의 조사·분석·연구

5. 국내외 재정과 관련된 주요 기관과의 협력

6. 주요 재정제도와 관련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8. 재정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재정통계의 분석 및 정비방안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0. 국민부담률 전망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분석

⑧ -----
-----.

1. 「국가재정법」의 해석·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법제의 범위와 체계개편

3. (현행과 같음)

4. 국가재정운용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정정책 과제의 제도화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6. --- 재정제도 관련 대국민 홍보-----

7. 재정사업 전달체계 분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재정지출·조세지출 간 연계·통합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9. 해외 재정제도의 조사·분석

<신 설>

⑧ 재정건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금·보험 등 사회분야 지출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2. (생략)

3.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운용목표의 설정·관리

4.·5. (생략)

6. 중장기 재정전망 및 추계에 관한 사항

7.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및 사회변수에 대한 조사·분석

8. 재정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 14. (생략)

15. 재정의 범위에 대한 조사·분석

⑨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연구에 관한 사항

10. 재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조정

⑥ -----
-----.

1.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 설정·관리

2. (현행과 같음)

<삭제>

4.·5. (현행과 같음)

6. 국내 월간 재정동향 발간

7. 주요국의 국가채무 및 건전성 지표 관련 조사·분석

<삭제>

9. ~ 14. (현행과 같음)

15. 그 밖의 재정건전화 관련 현황 분석·협의 및 정책에 관한 사항

⑩ -----
-----.

1. (생략) 2. 재정통계의 <u>수집·분석 및 정보화</u>에 관한 사항 3. ~ 14. (생략) ⑩ <u>참여예산과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1. ~ 5. (생략) 제15조의2(재정관리국) ① ~ ④ (생략)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u><신설></u> 3의2. ~ 3의8. 삭제	1. (현행과 같음) 2. ----- <u>정보화</u>----- 3. ~ 14. (현행과 같음) ⑨ <u>재정협력과장</u>----- -----. 1. <u>국내 주요 기관과의 재정협력 총괄</u> 2. <u>국내 연구기관·학회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u> 3. <u>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u> 4. <u>해외 주요국과의 재정협력에 관한 사항</u> 5. <u>아시아·태평양 재정협력체 운영</u> 6. ~ 10.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15조의2(재정관리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2. (현행과 같음) 3. <u>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운영</u>
--	---

<신 설>

5. 삭 제

6. 국가재정관리업무의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6의2. 삭 제

6의3. ~ 6의12. (생 략)

6의13. 균형발전영향평가 수행 및 관리

6의14. ~ 24. (생 략)

25. 행정분야 재정 성과목표 관리·운영

26. 행정분야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

27. 행정분야 재정사업 평가결과 분석 및 관리·활용

28. (생 략)

⑥ 재정성과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분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수행·관리

<신 설>

2의2. 사회·경제분야 재정 성과목표 관리·운영

2의3. 사회·경제분야 재정사업

4.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의 운영

<삭 제>

6의3. ~ 6의12. (현행과 같음)

<삭 제>

6의14. ~ 2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28. (현행과 같음)

⑥ -----
-----.

1.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관한 사항

2의2. 부처별 유사·중복 보조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u>자율평가제도의 운영</u> <u>2의4. 사회·경제분야 재정사업</u> <u>평가결과 분석 및 관리·활용</u> <u>2의5. 사회·경제분야 성과관리</u> <u>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편람의</u> <u>작성</u> <u>2의6. 사회·경제분야 재정사업</u> <u>의 평가 업무지원을 위한 업</u> <u>무편람의 작성</u> 3. ~ 6. (생략) <u>7.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u> <u>부정수급 대응 등 국고보조</u> <u>사업 관련 정책수립</u> <u>8.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u> <u>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부처별</u> <u>유사·중복 보조사업 조정</u> <u><신설></u> <u><신설></u> ⑦ 타당성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u><신설></u>	<u><삭제></u> <u><삭제></u> <u><삭제></u> 3. ~ 6. (현행과 같음) 7. ----- <u>국고보조사업</u> ----- ----- <u>8.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u> <u>운영에 관한 사항</u> <u>9.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u> <u>운영을 위한 정책·법령·제</u> <u>도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u> <u>10.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u> <u>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에</u> <u>관한 사항</u> ⑦ ----- -----. 1. ~ 12. (현행과 같음) <u>13. 국제행사심사에 관한 사항</u>
---	--

⑧·⑨ (생략)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삭제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국제조세제도과장, 기업환경과장, 국유재산조정과장, 재정정보과장, 참여예산과장, 외환제도과장, 금융협력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4조(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

축추진단) 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에 재정시스템과를 두며, 재정시스템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재정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⑨ (현행과 같음)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③ -----

----- 재정협력과장

<삭제>

1.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관련
재정분석 교육과 업무지원 체
계 마련
3.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사업의 관리
4.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과 다
른 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재정·행정·통계 관련 정보
시스템 간의 연계
5.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및 재정분석
을 위한 연구개발
6.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조
정
- ④ 삭제
- ⑤ 삭제
- ⑥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
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 · 구정원대비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u>	<u><신 설></u>	<u>26</u>	+26
<u>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u>	<u>26</u>	<u><삭 제></u>	-26
·	·	·	
<u>행정서기 · 세무서기 · 관세서기 · 전산서기 · 통계서기 또는 사서서기</u>	<u><신 설></u>	<u>15</u>	+15
<u>행정서기보 · 세무서기보 · 관세 서기보 · 전산서기보 · 통계서기 보 또는 사서서기보</u>	<u><신 설></u>	<u>9</u>	+9

<u>행정서기 · 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u>	<u>15</u>	<u><삭 제></u>	-15
<u>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u>	<u>9</u>	<u><삭 제></u>	-9
·	·	·	
·	·	·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 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 보 또는 사서주사보</u>	<u><신 설></u>	<u>26</u>	+26
<u>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u>	<u>26</u>	<u><삭 제></u>	-26
·	·	·	
<u>행정서기 · 세무서기 · 관세서기 · 전산서기 · 통계서기 또는 사서서기</u>	<u><신 설></u>	<u>15</u>	+15
<u>행정서기보 · 세무서기보 · 관세 서기보 · 전산서기보 · 통계서기 보 또는 전산서기보</u>	<u><신 설></u>	<u>9</u>	+9
<u>행정서기 · 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u>	<u>15</u>	<u><삭 제></u>	-15

<u>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u>	<u>9</u>	<u><삭 제></u>	-9
•	•	•	
•	•	•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기획재정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6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준속기한: 2022년 10월 31일)	1.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준속기한: 2022년 10월 31일)	<삭 제>	-1.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준속기한: 2022년 10월 31일)
총계	8	<삭 제>	-8
일반직 계	8	<삭 제>	-8
고위공무원단	1	<삭 제>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삭 제>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삭 제>	-1

<u>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농업사무관 · 환경사무 관 · 공업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u>	<u>4</u>	<u><삭 제></u>	-4
<u>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u> <u>통계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